



제 1174호

2014년 5월 30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4-	967호	2014년 남동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CCTV) 설치 행정예고	2
○ 공고 제2014-	969호	공영주차장 급지 선정 및 유료화 공고	7
○ 공고 제2014-	979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8
○ 공고 제2014-	980호	2014년 제4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소래썩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	9
○ 공고 제2014-	987호	재산압류 통보 및 채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공고)	11
○ 공고 제2014-	988호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부지 매입 보상계획 열람 공고	13
○ 공고 제2014-	989호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16
○ 공고 제2014-	99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7
○ 공고 제2014-	997호	201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4
○ 공고 제2014-	998호	인천광역시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6
○ 공고 제2014-	100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안등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53
○ 공고 제2014-	100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1
○ 보건소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71
○ 보건소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72

고 시

○ 고시 제2014-	74호	도로명주소 고시	73
○ 고시 제2014-	75호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77
○ 고시 제2014-	76호	도시관리계획(향촌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2
○ 고시 제2014-	77호	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94
○ 고시 제2014-	78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96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967호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안내 및 전문가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가. 사 업 명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나. 시 행 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다. 설치장소 : 2개소

행정동명	위 치
논현동	① 논현동 소래대교 밑(논현동 66-30)
논현동	② 논현동 청능로사거리(논현동 649-2)

※설치예정장소 위치도면:별첨

라.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2014. 5. 23 ~ 6.13)

마.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바.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주차단속팀)로 문의
(☎032-453-2890)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남동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예정 장소

행정동명	위 치
논현동	① 논현동 소래대교 밑(논현동 66-30)
논현동	② 논현동 청능로사거리(논현동 649-2)

※첨부된 위치도면 및 현장사진 참조

위치도면 및 현장사진 (고정형 CCTV)

① 논현동 소래대교 밑(논현동 66-30)

■ 위치도면



■ 현장사진



② 논현동 청능로사거리 649-2)

■ 위치도면



■ 현장사진



행 정 예 고 의 건 제 출 서

1. 행정예고 내용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2. 당 사 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연락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 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969호

공영주차장 급지 선정 및 유료화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제1주차장 외 3개소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및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규정에 의거 유료화에 따른 급지 및 운영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시행일 : 2014. 7. 1

2. 급지 및 운영사업자

구 분	주 차 장 명	면 수	급 지	운 영 사 업 자
노 외	장수제1주차장	26	3급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장수제2주차장	24	"	
	서창제2주차장	36	"	
	서창제5주차장	60	"	

3. 시간제 주차요금

구 분	급 지	1회 주차권		전 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최초30분까지	15분초과마다		
노 외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979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2014. 5. 13일자 재결서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 시행자 :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
4. 공 고 기 간 : 2014. 5. 27 ~ 6. 11
5.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건설과(032-453-2712)
6. 공시송달내용 :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정본
7. 공시송달대상 : 소유자 및 관계인
 - 이 씨 :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3*1
 - 이 씨 :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3*6-5
 - 이 씨 :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3*6-2
 - 원용덕 :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3*0
 - 이승창 :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3*9
 - 오웅섭 :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3*0
 - 오정섭 : 인천시 중구 경동 8*

8. 기타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980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소래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
2014년 제4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소래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 와 명칭 : 소래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 및 열람기간 : 2014. 5. 27 ~ 6. 11(15일간)
4. 열람내용 : “붙임” 과 같음
5.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남동구청 건설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토지)

사업명 :소래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금 액(원)				소유자 성 명 (지분율)	비 고
	동명	지번	지목		면적(㎡)		감정평가업자			사업자 제시액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온누리	통일				
1	수산동	8-2	도	도	129(11/66)	129(11/66)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배인복(11/66)	
					129(11/66)	129(11/66)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배창숙(11/66)	
	소계				Bitmap 43.0	43.0				0		
2	수산동	8-3	도	도	55(11/66)	55(11/66)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배인복(11/66)	
					55(11/66)	55(11/66)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배창숙(11/66)	
	소계				18.3	18.3				0		
3	수산동	산2-4	임	임	1(2/15)	1(2/15)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조정숙(2/15)	
					1(2/15)	1(2/15)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조인(2/15)	
	소계				0.3	0.3				0		
	합 계				61.6	61.6				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9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보 및 체납액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폐문부채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4년 5월 27일 ~ 2014년 6월 13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재산압류 통보 및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공고)		
2. 당사자	성 명	별지참조	주민등록번호	별지참조
	주 소	별지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체납		
4. 부동산의 표시		별지참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보 및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6. 법적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3)		

체납자 재산압류 및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연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압류부동산의 표시	비고
1	장영근	600803-*****	인천시 남동구 오봉로 33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73-2	
2	이순영	650407-*****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70	
3	조경상	540727-*****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4	황세미	6302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213번길	인천시 중구 운서동	
5	김은경	740321-*****	인천시 서구 염곡로 172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6	이용호	590905-*****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623번길 26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44-5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988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모래내시장 고객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의거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 모래내시장 고객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사업
3. 보상 시기 : 2013. 6월중(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보상금 지급 및 문의처 :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 032-453-6073)
5. 보상 대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10번길 42-8
6. 보상 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 보상
 - 지장물 즉시 철거 조건으로 지급
 - 보상계약 체결이전에 소멸된 지장물은 보상 불가
7.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8. 열람기간 : 2014. 5. 27 ~ 6. 11
10. 열람장소 :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032-453-6073)
11. 기타사항 : 물건조서 등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업지원과에 문의 또는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물건조서 첨부)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부지 토지조서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남동구 호구포로810번길	42-8	대	271.1	김동천	
		이 하 여 백				

모래내시장 고객센터 및 공동배송센터 부지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1	남동구 호구포로 810번길	42-8	건물지층	철근콘크리트조	133.43㎡	김동천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85.46㎡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77.12㎡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구조	143.88㎡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조	96.6㎡		
			이 하 여 백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989호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제공일자 : 2014. 5. 23
- 제공받는 자 : 아진전산
- 제공목적 : 201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필지 및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 공고기간 : 2014. 5. 27. ~ 2014. 6. 10.(15일간)
- 공고방법 : 남동구 홈페이지

2014년 5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99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2. 개정이유

- 유해성 폐기물인 폐건전지, 폐형광등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을 중점수거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제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숙박업소의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과태료 부과기준 대상 삭제되었으나 구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시행령과 저촉됨.
- 또한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완화로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지침이 폐지되고 전문신고꾼에 의한 영세상인 괴롭히기를 방지하고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고,
- 아울러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존치시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6조 제1항 중점수거 품목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추가지정

- 제4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5장 보칙 제24조, 제25조 삭제
-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의 3의 나. 숙박업소 삭제
-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 명칭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청소과, 전화 : 032-453-2560, FAX : 032-453-25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유해성 폐기물인 폐건전지, 폐형광등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을 중점수거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제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숙박업소의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과태료 부과기준 대상 삭제되었으나 구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시행령과 저촉됨.
- 또한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완화로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전문신고꾼에 의한 영세상인 괴롭히기를 방지하고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고,
- 아울러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존치시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6조 제1항 중점수거 품목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추가지정
- 제4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5장 보칙 제24조, 제25조 삭제
-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의 3의 나. 숙박업소 삭제
-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 명칭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변경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6조 제1항 재활용 중점 수집 품목에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추가하고 종이류는 폐지와 종이팩을 분리하여 수집한다.

제4장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삭제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 내지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의 3의 나. 숙박업소를 삭제한다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의 명칭을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며 포상금 기준란을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품목을 중점 수집대상 품목으로 정한다. 1. 종 이 류 2. 병 류 3. 캔 류 4. 금 속 류 5. 플라스틱류 6. 의 류 7. 농업용 폐비닐 8.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제4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액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20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02. 27.) 제17조(신고포상금의 범위)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커피 등을 무상제공 하는 행위 포함)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품목을 중점 수집대상 품목으로 정한다. 1. 종 이 류(폐지, 종이팩 구분) 2. 병 류 3. 캔 류 4. 금 속 류 5. 플라스틱류 6. 의 류 7. 농업용 폐비닐 8. 폐건전지 9. 폐형광등 10.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 · 소 매 업 소 에 서 A 4 규 격 (210mmX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05. 7. 29.) 제18조(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9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제20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필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3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⑥ 구청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14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22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은 현금 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7. 29.)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되어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규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1. 제1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에서 받은 금액으로 하여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05. 7. 29.)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8. 피신고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u>제5장 보 칙</u> 제24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예산(과태료징수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5장 보 칙</u>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별표 1] - 개정 前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 상 금 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과 태 료				포 상 금 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	5	10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2

과 태 료				포 상 금 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2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법 제14조)	200	300	300	
5.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	300	300	300	
6.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7.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200	250	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과 태 료				포 상 금 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8.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9.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30	50	100	
10.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별표 1] - 개정 後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나.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2)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과 태 료			
부 과 대 상	1차워반	2차워반	3차워반 (이후)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	5	10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과 태 료			
부 과 대 상	1차워반	2차워반	3차워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10	30	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법 제14조)	200	300	300
5.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	300	300	300
6. 비용을 반환하는 자에게 비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7.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200	250	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과 태 료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8.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9.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30	50	100
10.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참고자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시·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구”라 한다)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시 1회용품의 사용억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시·구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의 촉진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품목을 중점 수집대상 품목으로 정한다.

1. 종 이 류
2. 병 류
3. 캔 류(주석, 알미늄 구분)
4. 금 속 류
5. 플라스틱류
6. 의 류
7. 농업용 폐비닐
8.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제7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군부대, 국·공·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이행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실시
3. 기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3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기준)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1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구청장은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부기간이 도과하면 감경(50%)혜택을 받을수 없다.

제12조(의견제출)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이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액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02. 27.)

제17조(신고포상금의 범위)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커피 등을 무상제공하는 행위포함)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05. 7. 29.)

제18조(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9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

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 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필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3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된 경우나 제3항의 감면 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14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22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은 현금 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05. 7. 29.)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 태료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되어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규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에서 받은 금액으로 하여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개정 2005. 7. 29.)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8. 피신고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재판을 받게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예산(과태료징수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997호

201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 기 준 일 : 2014. 1. 1기준
- 대 상 : 42,007필지
- 결정·공시일 : 2014. 5. 30.
- 결정내역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14. 5. 30. ~ 6. 30.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 제출방법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
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처 : 남동구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2) 453-6153, 6154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6.27>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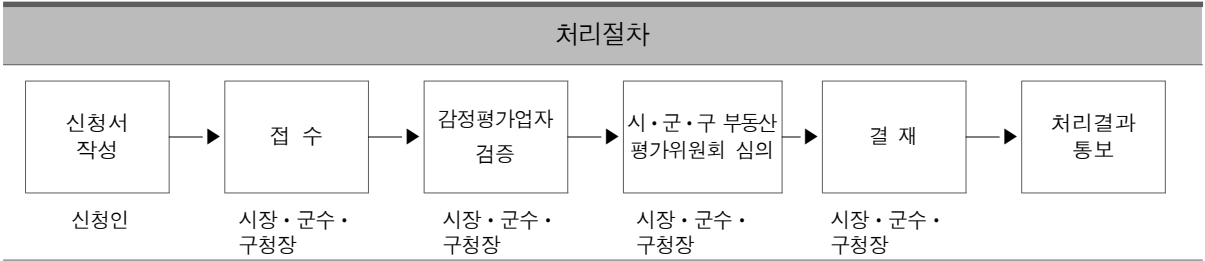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99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남동문화예술회관’의 현 명칭이 타 예술회관과 유사하여 관람객이 장소를 혼동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타 기관과 명확히 구분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으로 주민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기에 회관에 대한 인지도향상을 위해 기구명칭을 조속히 변경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별표 1의2] 사업소의 명칭
○ (기존) 남동문화예술회관 → (변경) 남동소래아트홀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5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남동문화예술회관’의 현 명칭이 타 예술회관과 유사하여 관람객이 장소를 혼동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타 기관과 명확히 구분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새 명칭으로의 변경 필요성 대두
- 주민공모와 심사를 통해 새로운 명칭을 선정하였기에 명칭변경을 위한 기구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회관에 대한 인지도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1의2] 사업소의 명칭
 - (기존) 남동문화예술회관 ➡ (변경) 남동소래아트홀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사업소와 출장소 등)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사업소의 명칭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가목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2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관리책임부서인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별표 1의2]

사업소의 명칭 · 관할구역 (제11조의4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u>남동소래아트홀</u>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437번길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
지식정보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79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
남동체육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5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의2] 사업소의 명칭·관할구역(제11조의4 관련) <table><tr><th>명칭</th><th>위치</th><th>관할구역</th></tr><tr><td>지식정보센터</td><td><생략></td><td><생략></td></tr><tr><td>남동문화예술회관</td><td><생략></td><td><생략></td></tr><tr><td>남동체육관</td><td><생략></td><td><생략></td></tr></table>	명칭	위치	관할구역	지식정보센터	<생략>	<생략>	남동문화예술회관	<생략>	<생략>	남동체육관	<생략>	<생략>	[별표 1의2] 사업소의 명칭·관할구역(제11조의4 관련) <table><tr><th>명칭</th><th>위치</th><th>관할구역</th></tr><tr><td>남동소래아트홀</td><td><생략></td><td><생략></td></tr><tr><td>지식정보센터</td><td><생략></td><td><생략></td></tr><tr><td>남동체육관</td><td><생략></td><td><생략></td></tr></table>	명칭	위치	관할구역	남동소래아트홀	<생략>	<생략>	지식정보센터	<생략>	<생략>	남동체육관	<생략>	<생략>
명칭	위치	관할구역																							
지식정보센터	<생략>	<생략>																							
남동문화예술회관	<생략>	<생략>																							
남동체육관	<생략>	<생략>																							
명칭	위치	관할구역																							
남동소래아트홀	<생략>	<생략>																							
지식정보센터	<생략>	<생략>																							
남동체육관	<생략>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남동문화예술회관’ 명칭변경
- 관련 조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기 획 예 산 실 장 윤 인 석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00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안등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안등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안등 설치 및 관리지침

2. 개정이유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안전시설 설 치 및 관리지침, 인천광역시 도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여 보안등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제2조(보안등의종류) 보안등의 종류 개정
- 제3조(설치) 보안등 및 수신기 설치 위치 개정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민원처리기한 명확히 명시
- [별표1] 보안등 표찰(예시) 개정

4. 참고자료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도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고충처리의 민원)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749, FAX 453-27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안등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안등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인천광역시 도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여 보안등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2조(보안등의종류) 보안등의 종류 개정
- 제3조(설치) 보안등 및 수신기 설치 위치 개정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민원처리기한 명확히 명시
- [별표1] 보안등 표찰(예시) 개정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도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고충처리의 민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안등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안등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안등의종류)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 류	용 량(W)
고압나트륨 램프	100~150
세라믹메탈할라이드 램프	70~100
LED램프	30~70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4~5미터의 높이로”를 각각 “4미터 이상의 높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 1.8~2.2미터 높이로”를 “양호한 장소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신속히 처리하여야”를 “3일 이내 처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는 경우는 일수계산에서 제외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안등 표찰(예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보안등의종류) 보안등의 종류 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 류 용 량광 속 고압나트륨100와트 9,500루멘 고압나트륨 50와트3,0 00루멘	제2조(보안등의종류) 보안등의 종류 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 류 용 량(W) 고압나트륨 램프 100~150 세라믹메탈할라이드 램프 70~100 LED램프 30~70
제3조(설치) ①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다 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 터이상 도로로써 가로등 설치가 부 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 을 설치 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설치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2. 보안등 전용주에 설치할 때 : 지 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3. (생략) ② (생략) ③ 수신기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 며, 지상 1.8~2.2미터 높이로 설치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조(설치) ① ----- ----- ----- ----- ----- ----- -----. 1. ----- ----- 4미터 이상의 높이에 - 2. ----- ----- 4미터 이상의 높이에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수신이 양호한 장소 에-----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생략)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현행과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의한 확인 또는 보수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 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같음)

② -----

----- 3일이내 처리하
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천재지
변 등)가 있는 경우는 일수계산에
서 제외한다.

실·단·과·소·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00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2011.8.22, 의안번호 제2011-97호)』 및 『안전행정부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2011.7)』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까지 보관해 오던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는 한편, 민원처리 시 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전자적 납부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조항변경 : 개정전 26개조
⇒ 개정후 8개조(준치 2개조, 수정 4개조, 폐지 20개조, 신설 2개조)
 -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전자적 납부 도입 근거 마련 신설(안 제3조)
 -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변상책임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
 - 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부칙 제2조)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등의 전자적 납부)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등)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351, FAX 453-236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 별첨(아래)참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	--------

제출연월일 : 2014. 5. .

제출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2011.8.22, 의안번호 제2011-97호)』 및 『안전행정부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2011.7)』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까지 보관해 오던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는 한편, 민원처리 시 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전자적 납부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전자적 납부 도입 근거 마련(안 제3조)
- 나.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변상책임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
- 다. 종이 수입증지의 폐기(부칙 제2조)

☐ 본 문 : “별첨”

☐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등의 전자적 납부)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등)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표시되도록 하는 기계를 말한다.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란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 등을 통해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다.

제5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 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발행 또는 발급번호

②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민원처리기기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 납부 및 정산) ①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수수료 수입금을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기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호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2의 결손인을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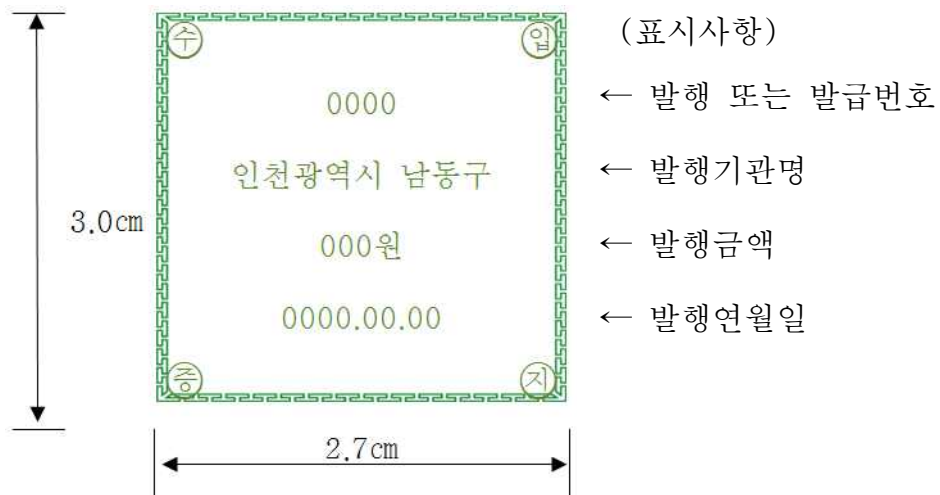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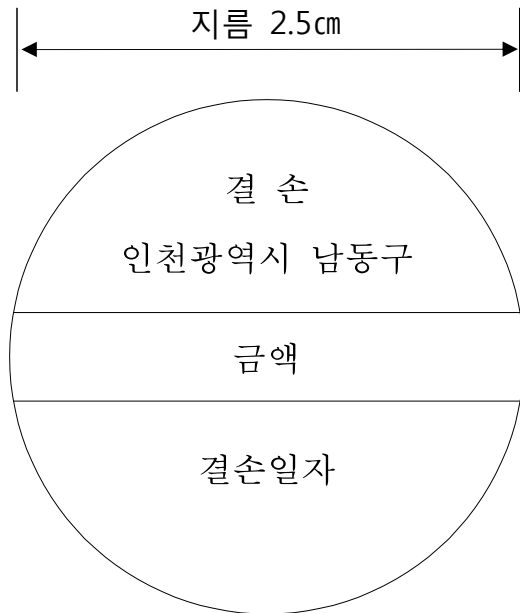
제2조(종이 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하여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폐기한다.

[별표1]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아자 형태인 사각형으로 하고, 구의 특색 또는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

[별표2] 결손인 규격 및 표시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

(수입증지요금계기용)

행정기관명 :

담당부서 :

담 당 자 :

기기번호 :

정산일자 :

(단위 : 원)

일자	구분		금액별 발행 내역												결손 (B)	실 발행 (A-B)
			계 (A)	100												
/	일계	건수														
		금액														
	누계	건수														
		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
(통합민원발급기용)

행정기관명 :

담당부서 :

답 당 자 :

기기번호 :

정산일자 :

(단위 : 원)

증명서 종류	증지금액	금일 발행		금일 결손		실 발행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일 계							
전일 월계							
금일 월계							
전일 일계							
금일 일계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

(무인민원발급기용)

자치단체명 :

담당부서 :

담 당 자 :

조회기간 :

정산일자 :

(단위 : 원)

순 번	발급기명	발급기IP	건수합계	증명서 종류														
			수수료합계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4 - 35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4. 06. 05.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4. 05. 26. ~ 2014. 06. 04. (10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남도-285	할매보쌈. 부대찌개	전*녀	호구포로535번길 39, 1층 (남촌동 284번지)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3.11.25	2014.06.05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4. 06. 04.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제결청(인천광역시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4년 5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4 - 36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4. 6. 10.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4. 5. 30 ~ 2014. 6. 9(11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간석2-95	김태희치킨	김**	남동대로884번길 9(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	2013.12.31	2014.6.10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4. 6. 9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3

2014년 5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7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81의 12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 16-35의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랑(13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랑(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05.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	16-3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21	2014.05.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12번길	1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80-4	2014.05.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12번길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80-6	2014.05.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07번길	12-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0-13	2014.05.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9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6-4	2014.05.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9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6-5	2014.05.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18번길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43-4	2014.05.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 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14-15외 1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81	20090710	백범 김구 선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제명	2014.05.2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백범로 38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81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4-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13번길	85	20091116	성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40m지 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 영하여 제명	2014.05.2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성말로13번길 8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5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446외 1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	16-35	20091116	만부마을이라는 마을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4.05.2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부로 16-3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35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118-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370	20091116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가족과 의논하며 넘던 고개라는 지역의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4.05.2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고개로 370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70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118-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368	20091116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가족과 의논하며 넘던 고개라는 지역의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4.05.2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고개로 368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68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90-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378	20090710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 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4.05.2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 378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78을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90-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378-1	20090710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 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4.05.2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 378-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78-1을 건물번호로 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90-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378-2	20090710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 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4.05.2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 378-2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78-2를 건물번호로 부여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	139	20091116	비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76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 을 반영하여 제명	2014.05.2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비류대로762번길 139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39를 건물번호로 부여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산36-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1	20090706	만월산을 통과하는 도로로 산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14.05.2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월로 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을 건물번호로 부여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산36-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1-1	20090706	만월산을 통과하는 도로로 산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14.05.2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월로 1-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1을 건물번호로 부여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산36-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1-2	20090706	만월산을 통과하는 도로로 산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14.05.2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월로 1-2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2를 건물번호로 부여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산36-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1-3	20090706	만월산을 통과하는 도로로 산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14.05.2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월로 1-3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3을 건물번호로 부여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75호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14. 6. 12.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 첨 부 ”

2014년 5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통·반 구역 조정 세부내역

[논현2동]

통·반 구역 조정현황

구 분	조정전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남동구	634	3,596	2	13	636	3,609	
논현2동	31	197	2	13	33	210	

통·반 구역 조정사유 및 내역

기존	조 정 사 유			조정결과
16통	○ 세대수 과대 통 분할(하늘마을 및 오피스텔지역)			1개통 ↑ 7개반 ↑
	- 16통 5개반(878세대)	⇒	- 16통 6개반 (432세대) - 32통 6개반 (446세대)	
28통	○ 세대수 과대 통 분할(리틀야구장뒤 원룸단지지역)			1개통 ↑ 6개반 ↑
	- 28통 7개반(848세대)	⇒	- 28통 7개반 (386세대) - 33통 6개반 (462세대)	

통 · 반 조정 세부내역

○ 통 · 반 구역 조정 세부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16	소 계		878	16	소 계		432	과대통 분할
	1	논현로 43 상가 A동 논현로 45 - 하늘마을 301동 1~7층	56		1	논현로 43 상가 A동 논현로 45 - 하늘마을 301동 1~7층	56	
	2	논현로 45 - 하늘마을 301동 8~15층	62		2	논현로 45 - 하늘마을 301동 8~15층	62	
	3	논현로 40, 42 호구포로 212, 214, 220 논현로 46번길 14 논현로 46번길 22 - 코아루파크 A동, B동 논현로 46번길 39 - 동원베네스트 타워 101동, 102동, 103동 논현로 46번길 39-24, 30 논현로 46번길 39-36, 60 논현로 46번길 51 -유승테라플리스	524		7	논현로 40, 42 호구포로 212, 214, 220	78	
	4	논현로 45 - 하늘마을 302동 1~15층	118		3	논현로 45 - 하늘마을 302동 1~7층	56	
	5	논현로 45 - 하늘마을 303동 1~15층	118		4	논현로 45 - 하늘마을 302동 8~15층	62	
32	소 계		446	32	소 계		446	통신설
	1	논현로 46번길 14 논현로 46번길 22 -코아루파크 A동	48		1	논현로 46번길 14 논현로 46번길 22 -코아루파크 A동	48	
	2	논현로 46번길 22 -코아루파크 B동	57		2	논현로 46번길 22 -코아루파크 B동	57	
	3	논현로 46번길 39 -동원베네스트타워 101동	105		3	논현로 46번길 39 -동원베네스트타워 101동	105	
	4	논현로 46번길 39 -동원베네스트타워 102동	100		4	논현로 46번길 39 -동원베네스트타워 102동	100	
	5	논현로 46번길 39 -동원베네스트타워 103동	100		5	논현로 46번길 39 -동원베네스트타워 103동	100	
32	소 계		446	32	소 계		446	통신설
	6	논현로 46번길 39-24, 30 논현로 46번길 39-36, 60 논현로 46번길 51 -유승테라플리스	36		6	논현로 46번길 39-24, 30 논현로 46번길 39-36, 60 논현로 46번길 51 -유승테라플리스	36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28	소 계		850	28	소 계		388	과대동 분할
	1	은봉로 209번길 전부 은봉로 225번길 전부	30		1	은봉로 209번길 전부 은봉로 225번길 전부	30	
	2	은봉로 255번길 전부 은봉로 269번길 전부	35		2	은봉로 255번길 전부 은봉로 269번길 전부	35	
	3	은봉로 283 논고개로 175번길 14-1, 14-5, 14-11, 14-13, 14-15 22, 22-6, 22-9, 22-12, 22-14, 22-16 24, 30-6 논고개로 187번길 15, 23	144		3	은봉로 283 논고개로 175번길 14-15, 22-9, 22-16, 24, 30-6 논고개로 187번길 15, 23	73	
	4	논고개로 175번길 2, 10, 12 6-6, 6-7, 6-8, 6-10, 6-11, 6-12, 6-13, 6-14, 6-16 14-6, 14-10, 14-12, 14-14 논고개로 187번길 3, 7, 9	183		4	논고개로 175번길 14-1, 14-5, 14-11, 14-13 22, 22-6, 22-12, 22-14	64	
	5	논고개로 187번길 2, 6, 8, 12 논고개로 205번길 30-3, 30-7, 30-15, 31, 35, 37 38-1, 38-2, 38-5, 38-6, 38-9, 38-10 38-14	171		5	논고개로 175번길 6-7, 6-11, 6-13, 10, 12, 14-6, 14-10, 14-12,	68	
	6	논고개로 205번길 12-5, 12-7, 12-9, 12-13, 20-2, 20-6, 20-7, 20-9, 20-10, 20-11 22, 30-2, 30-6, 30-8, 30-14 수골로 54번길 79	166		6	논고개로 175번길 2, 6-6, 6-8, 6-10, 6-12	60	
	7	논고개로 205번길 3, 11, 12-6, 12-12, 12-16, 15, 19, 23, 27	121		7	논고개로 175번길 6-16, 6-14, 14-14 논고개로 187번길 3, 7, 9	58	
	소 계			33	소 계		462	통 신설
	1	논고개로 187번길 2, 6, 8, 12 논고개로 205번길 37, 38-1, 38-5, 38-9			1	논고개로 187번길 2, 6, 8, 12 논고개로 205번길 37, 38-1, 38-5, 38-9	80	
	2	논고개로 205번길 15, 19, 23, 27, 31, 35			2	논고개로 205번길 15, 19, 23, 27, 31, 35	75	
	3	논고개로 205번길 30-3, 30-7, 30-15, 38-2, 38-6, 38-10, 38-14,			3	논고개로 205번길 30-3, 30-7, 30-15, 38-2, 38-6, 38-10, 38-14,	64	
	4	논고개로 205번길 20-7, 20-9, 20-11, 22 30-2, 30-6, 30-8, 30-14			4	논고개로 205번길 20-7, 20-9, 20-11, 22 30-2, 30-6, 30-8, 30-14	101	
	5	논고개로 205번길 12-5, 12-7, 12-9, 12-13, 20-2, 20-6, 20-10 수골로 54번길 79			5	논고개로 205번길 12-5, 12-7, 12-9, 12-13, 20-2, 20-6, 20-10 수골로 54번길 79	77	
	6	논고개로 205번길 3, 11, 12-6, 12-12, 12-16			6	논고개로 205번길 3, 11, 12-6, 12-12, 12-16	65	

통·반 구역 조정 현황							
▷ 승인 일자 : 2014.6.12							
구분 동명	현행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계	634	3,596	2	13	636	3,609	
구월1동	36	197	0	0	36	197	
구월2동	41	222	0	0	41	222	
구월3동	25	137	0	0	25	137	
구월4동	31	171	0	0	31	171	
간석1동	38	214	0	0	38	214	
간석2동	20	139	0	0	20	139	
간석3동	49	257	0	0	49	257	
간석4동	39	213	0	0	39	213	
만수1동	35	171	0	0	35	171	
만수2동	33	177	0	0	33	177	
만수3동	23	132	0	0	23	132	
만수4동	32	198	0	0	32	198	
만수5동	28	184	0	0	28	184	
만수6동	33	185	0	0	33	185	
장수서창동	38	197	0	0	38	197	
남촌도림동	34	193	0	0	34	193	
논현1동	39	241	0	0	39	241	
논현2동	31	197	2	13	33	210	
논현고잔동	29	171	0	0	29	171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76호

도시관리계획(향촌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향촌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향촌구역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I. 향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109,110번지 일원	203,241.1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결정 조서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비 고
주거 지역	소 계	203,241.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4,306.7	16.9	
	제3종일반주거지역	168,934.4	83.1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²)	노선수	연장(m)	면적(m²)	노선수	연장(m)	면적(m²)	노선수	연장(m)	면적(m²)
기정	합계	12	1,254	17,131.7	1	469	12,468.6	3	305	566.0	8	476	4,097.1
	중로	3	649	14,455.0	1	469	12,468.6	-	-	-	2	180	1,986.4
	소로	9	605	2,676.7	-	-	-	3	305	566.0	6	296	2,110.7

주) 도로연장 및 면적은 구역 내의 도로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도로번호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태	주요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80	20~298	집산도로	840(469)	대1-14	중1-62	일반도로		'01.10.29	
기정	중로	3	363	12	국지도로	96(96)	향촌구역계(만수동7425)	중1-180	일반도로		'05.11.10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84(84)	중1-180	향촌구역계(만수동109-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	9~125	국지도로	1,448(21)	중1-180	소2-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138(60)	중1-62	중1-180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60(21)	중1-62	중1-180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5	6	국지도로	60(60)	소3-16	중1-180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6	6	국지도로	337(95)	중1-180	중3-363	일반도로		'01.10.8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47(47)	소3-16	중1-180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22(22)	소3-16	만수동80-112	일반도로		'07.1.10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13(13)	소3-16	만수동80-112	일반도로			

주) ()는 구역 내 도로의 연장임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	주차장	노 외 주차장	만수동 1116-3번지 일원	1,172.5	'05.11.10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	공 원	소공원	만수동 1117-3번지 일원	1,237.6	'01.10.08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공공청사	동사무소	만수동 1116-2번지 일원	1,400.3		
기정	공공청사	파출소	만수동 1119-2번지 일원	513.5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있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조성 계획

가) 계획방향

- 가구계획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적정 가구규모의 확보 및 인접 가구 규모와의 상호 연계를 고려한 적정 가구규모 설정

- 획지계획

○ 개발용도, 필지형태, 토지소유자, 소규모 필지 등 현황과약을 토대로 획지계획 수립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²)	
기정	-	1	147,684.7	①	147,684.7	·공동주택용지
기정	-	2	561.6	①	561.6	·근린생활시설용지
기정	-	3	24,550.7	①	21,977.9	·공동주택용지
				②	1,400.3	·동사무소
				③	1,172.5	·주차장
기정	-	4	5,718.4	①	1,265.3	·근린생활시설용지
				②	1,265.4	·근린생활시설용지
				③	515.9	·종교용지
				④	1,237.6	·소공원
				⑤	863.0	·현지개량지역
				⑥	547.0	·현지개량지역
기정	-	5	3,810.6	①	1,269.3	·근린생활시설용지
				②	1,405.3	·근린생활시설용지
				③	147.0	·현지개량지역
				④	989.0	·현지개량지역
기정	-	6	2,184.3	①	1,096.8	·근린생활시설용지
				②	469.4	·파출소
				③	44.1	·파출소
				④	574.0	·현지개량지역
기정	-	7	1,946.5	①	539.4	·수련시설용지
				②	580.9	·근린생활시설용지
				③	23.2	·현지개량지역
				④	803.0	·현지개량지역
변경	-	7	1,946.5	①	539.4	·수련시설용지
				②	580.9	·근린생활시설용지
				③	826.2	·현지개량지역
기정	-	8	405.0	①	405.0	·현지개량지역

3) 향촌지구 주 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서

연번	도면 위치	지 번	소유자		면적(m²)	비 고
			당초	변경		
1	3B1L	1116-1	남동구	-	21,249.7	공동주택용지
2	6B1L	1119-1	남동구		1,096.8	근린생활시설용지
3	6B2L, 6B3L	1119-2,-3	남동구		513.5	파출소용지
4	3B2L	1116-2	남동구		1,400.3	동사무소
5	4B3L	1117-4	남동구		515.9	종교용지
6	4B1L	1117-1	남동구		1,265.3	근생용지
7	4B2L	1117-2	남동구		1,265.4	근생용지
8	5B1L	1118-1	남동구		1,269.3	근생용지
9	5B2L	1118-2	남동구		1,405.3	근생용지
10	7B2L	1120-2	남동구		580.9	근생용지
11	7B1L	1120-1	남동구		539.4	수련시설
12	4B4L	1117-3	남동구		1,237.6	소공원용지

연번	도면 위치	지 번	소유자		면적(㎡)	비 고
			당초	변경		
13	3B3L	1116-3	남동구	-	1,172.5	주차장용지
14	4B5L	80-131외13	은○○,남동구		863.0	현지개량용지
15	4B3L	80-111	남동구		4.0	현지개량용지
16	4B6L	80-505	황○○,남동구		170.0	현지개량용지
17	4B6L	80-24, 80-507	박○○		186.0	현지개량용지
18	4B6L	80-91	최○○		191.0	현지개량용지
19	5B4L	80-86	최○○		89.0	현지개량용지
20	5B4L	80-31	최○○		311.0	현지개량용지 최○○ 단독소유
21	5B4L	80-34, 80-35	신○○		228.0	현지개량용지
22	5B4L	80-33	황○○,박○○		150.0	현지개량용지
23	5B4L	80-30	정○○		120.0	현지개량용지
24	5B4L	80-274	김○○		85.0	현지개량용지
25	6B4L	80-285, 80-286	원○○		151.0	현지개량용지
26	6B4L	80-695	조○○		73.0	현지개량용지
27	6B4L	80-287	박○○,남동구		112.0	현지개량용지
28	6B4L	80-307	송○○		122.0	현지개량용지
29	6B4L	80-704	지○○		64.0	현지개량용지
30	7B4L	80-309	주○○		47.0	현지개량용지
31	7B4L	80-753	변○○		64.0	현지개량용지
32	7B4L	80-322	한○○,김○○		130.0	현지개량용지
33	7B4L	80-323	장○○,남동구		118.0	현지개량용지
34	7B4L	80-324	이○○,이○○		89.0	현지개량용지
35	7B4L	80-779	신○○		78.0	현지개량용지
36	7B4L	80-337	홍○○		92.0	현지개량용지
37	7B4L	80-338	국○○		94.0	현지개량용지
38	8B	80-874	박○○		86.0	현지개량용지
39	8B	71-129	박○○,남동구		94.0	현지개량용지
40	8B	71-177	조○○		69.0	현지개량용지
41	8B	71-173	남동구		33.0	현지개량용지

주) 토지매매를 통한 소유자의 변동사항이 많아 소유자 기재사항 삭제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1)

구분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A	1-①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250% 이하 / 허용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25층 이하
			배 치	·별표1 참조
			형 태	·별표2 참조
			색 채	·별표2 참조
			건축선	·중로 1-180호선변 : 2m

2) 공동주택용지(2)

구분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A	3-①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220% 이하 / 허용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25층 이하
			배 치	·별표1 참조
			형 태	·별표2 참조
			색 채	·별표2 참조
			건축선	·중로 1-180호선변 : 2m ·중로 3-363호선변 : 1m ·소로 2-312호선변 : 2m

3) 공공청사용지

구분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B	3-② 6-②	용 도	·지정용도 : 동사무소(3-②), 파출소(6-②,③)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별표1 참조
			형 태	·별표2 참조
			색 채	·별표2 참조
			건축선	·중로 1-180호선변 : 2m ·중로 3-363호선변 : 1m ·소로 3-17호선변 : 1m

4) 종교용지

구분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C	4-③	용 도	·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 내 선교유치원 허용)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3-363호선변 : 1m

5)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D, E	2-①, 4-①,② 5-①,② 6-① 7-②	용 도	· 지정용도 : 불허용도를 제외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식물관련시설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공장 -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제조업 수리점 등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한용도 (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시한 청소년 유해업소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중로 3-1호선변 : 1m · 소로 3-13호선변 : 1m

6) 수련시설(변경없음)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F	7-①	용 도	· 지정용도 : 수련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소로 3-17호선변 : 1m

7) 현지개발지역(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G	4-⑤,⑥ 5-③,④ 6-③ 7-③ 8-①	용 도	·지정용도 : 불허용도를 제외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아파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식물관련시설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공장 -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제조업 수리점 등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한용도 (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시한 청소년 유해업소
			건폐율	·80% 이하 : 연면적 60㎡ 이하 건축물 ·70% 이하 : 연면적 60㎡ 초과 및 85㎡ 이하 건축물 ·60% 이하 : 연면적 85㎡ 초과 건축물 (단, 건축선(1m)에 접한 필지는 건폐율 인센티브(5% 이하) 적용)
			용적률	·300% 이하 (단,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및 연면적 60㎡ 이하 단독주택에 한하여 350% 적용)
			높 이	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거리의 2.5배 이하 나.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함(너비 8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외) - 높이 4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 높이 8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 높이 8m 초과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4 이상 ※ “가”, “나”의 기준은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및 연면적 170㎡ 이하 단독주택에 한함
			배 치	·별표1 참조
			형 태	·별표2 참조
			색 채	·별표2 참조
			건축선	·중로 1-180호선변 : 2m ·중로 3-363호선변 : 1m ·소로 3-13호선변 : 1m ·소로 3-14호선변 : 1m ·소로 3-15호선변 : 1m ·소로 3-17호선변 : 1m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규정의 1/2 이상 설치 (단, 단독주택 및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에 한함)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1) 경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 건축물은 층수를 25층 이하로 규제하고 동별로 층수를 다양화하여 시각적 개방감 확보 유도 - 비휴먼스케일의 건축물군이 생기지 않도록 건축물의 경관 계획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 형성 유도	· 고층화 / 초고층화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중로 1-180호선변 획지	-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하고 가로변의 미관을 고려한 건축계획 유도 - 보행기능의 강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배후 주거지의 서비스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상업가로의 조성	· 중층화

2)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	공동주택 획지 내 보행 및 차량동선	- 최소폭원 3m 이상으로 계획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 단지 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 단지 내 진입도로와 외곽도로는 T자형 교차를 원칙으로함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대지의 구간 - 공동주택용지의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중로 1-180호선 도로변 - 단독주택지와 인접한 공동주택용지 획지변	
	차량출입 허용구간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의 구간 및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의 구간 단)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의 구간 중 도로의 교차로,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잔후 10m 이내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을 불허함	

3)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	중로 1-180호선변, 소로 2-312호선변	- 전면공지 (보도부속형) : 중로 1-180호선변 및 소로 2-312호선변	- 중로 1-180호선변 : 2m 건축한계선 지정 - 소로 2-312호선변 : 2m 건축한계선 지정
	중로 3-363호선변, 소로 3-13, 3-14, 3-15, 3-17호선변	- 전면공지 (보도부속형) : 중로3-363호선, 소로 3-13, 3-14, 3-15, 3-17호선변	· 대지경계선에서 1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4)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가) 예정가격 :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감정평가액)

나) 일반공급기준 :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

다) 특별공급기준

① 수의계약 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에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도로·학교·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추첨에 의한 공급의 경우

② 지명경쟁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는 경우

- 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향촌구역 및 주 진입도로 구간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되, 유찰시(2회)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

라)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방법 및 조건	예정가격
구 분		면 적(㎡)		
합 계		203,241	-	-
주 용 거 지	소 계	180,743.2	-	-
	공 동 주 택 용 지	168,934.4	수의계약	감정평가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7,444.6	수의계약	감정평가
	현 지 개 량 용 지	4,364.2	-	-
도시기반시 설 용 지	소 계	21,442.5	-	-
	도 로	17,118.6	-	-
	공 원	1,237.6		
	주 차 장	1,172.5		
	동 사 무 소	1,400.3		
	파 출 소	513.5		
기타시설용 지	소 계	1,055.3		
	종 교	515.9	수의계약	감정평가
	수 련 시 설	539.4		

【별표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제어요소	제 어 지 침	제어구역
주동배치	· 남향위주로 배치하되 가로망에 평행하거나 직교하게 하여 전체배치에 질서감을 부여 ·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적정배치하고, 변화 있는 층고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형태를 다양화하여 배치	· 공동주택용지
	· 부지의 효율성및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적절하게 배치	·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구역 전체
건축한계선	· 정연한 가로경관의 확보 및 보도 확폭	· 중로 1-180호선변 : 폭 2m · 소로 2-312호선변 : 폭 2m · 중로 3-363호선변 : 폭 1m · 소로 3-13호선변 : 폭 1m · 소로 3-14호선변 : 폭 1m · 소로 3-15호선변 : 폭 1m · 소로 3-17호선변 : 폭 1m

【별표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계획

제어요소	제 어 지 침	제 어 구 역
외 장	· 색채 - 건축물 외벽색채의 기초는 품격 있고 친환경적인 색조로 유도함 · 형태 / 재료 -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질이 높은 것으로 함	· 구역전체
건축물 형 태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구역 전체
조 명	· 기존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의 증진을 위해 건축계획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조명설치 유도 ·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등 설치권장	· 가로변 및 보행통로 주변
건축설비	·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건축물 안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주변 경관에 배려하도록 함 · 가로변에 조성되는 건축물의 설비시설은 조경 등으로 차폐하여 시각적 위압감 완화	· 구역전체
캐노피 / 차양막	· 보도 및 보행가랑과 접하는 건축물에 설치 권장 · 최저높이 3.5m 이상, 최고 돌출길이 3m 이하	· 중1-180호선변
경사지붕	· 주거환경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조성 권장 · 간선가로변 건축물은 가로경관이나 옥상경관의 향상을 위해 평지붕의 설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박공지붕이나 모임지붕 등을 권장	· 공동주택
벽면처리의 통일성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중1-180호선변
개구부가 없는 벽면처리	· 폭 20m 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지 않음	· 중1-180호선변
간판 및 광고물	· 건축물에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는 가능한 1층 출입구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가로의 미관을 보호 · 경사지붕에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	· 구역전체
1층부 형태	· 쇼윈도 - 상업가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쇼윈도 등의 설치 · 투시형 셔터 / 투시벽 - 1층 전면용도와 가로활동과의 연속성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그래픽 셔터 등을 사용	· 중1-180호선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77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건설과(☎453-2722, 272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 다.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 라.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변경 있음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	6	국지	214	광3-7 운연동 산60-7	소3-1 운연동 4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연락골
변경	소로	3	2	6	국지	214	광3-7 운연동 산60-7	소3-1 운연동 4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204	소3-12 도림동220-3	- 도림동 22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1
변경	소로	3	14	6	국지 도로	204	소3-12 도림동220-3	- 도림동 22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15	6	국지 도로	99	소3-14 도림동219-2	- 도림동 228-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1
변경	소로	3	15	6	국지 도로	100	소3-14 도림동219-2	- 도림동 228-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정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 3-2	소로 3-2	• 도시계획선(도로선형) 일부 변경 • 면적 : 당초(1,284㎡) 변경(1,291㎡) 증(7㎡)	• 기존 지장물 저촉구간 및 현황 도로로 일부 구간 도로선형 변경	
소로 3-14	소로 3-14	• 도시계획선(도로선형) 일부 변경 • 면적 : 당초(1,288㎡) 변경(1,286㎡)	• 기존 지장물 저촉구간 및 현황 도로로 일부 구간 도로선형 변경	
소로 3-15	소로 3-15	• 도로모퉁이변 조정 • 면적 : 당초(701㎡) 변경(711㎡)	• 소3-14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도로 모퉁이변 조정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변경 없음

2. 지형(결정)도면 : “별첨” (게재 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78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 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건설과(☎453-2722, 272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다.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라.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변경 있음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	6	국지	214	광3-7 운연동 산60-7	소3-1 운연동 4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연락골
변경	소로	3	2	6	국지	214	광3-7 운연동 산60-7	소3-1 운연동 4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204	소3-12 도림동220-3	- 도림동 22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1
변경	소로	3	14	6	국지 도로	204	소3-12 도림동220-3	- 도림동 22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15	6	국지 도로	99	소3-14 도림동219-2	- 도림동 228-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1
변경	소로	3	15	6	국지 도로	100	소3-14 도림동219-2	- 도림동 228-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정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 3-2	소로 3-2	- 도시계획선(도로선형) 일부 변경 - 면적 : 당초(1,284㎡) 변경(1,291㎡) 증(7㎡)	기존 지장물 저촉구간 및 현황 도로로 일부 구간 도로선형 변경	
소로 3-14	소로 3-14	- 도시계획선(도로선형) 일부 변경 - 면적 : 당초(1,288㎡) 변경(1,286㎡)	기존 지장물 저촉구간 및 현황 도로로 일부 구간 도로선형 변경	
소로 3-15	소로 3-15	- 도로모퉁이변 조정 - 면적 : 당초(701㎡) 변경(711㎡)	소3-14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도로 모퉁이변 조정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변경 없음

2. 지형(결정)도면 : “별첨” (게재 생략)